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안 별표4 제15호)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전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실시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5.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2,000만원

같은 표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42